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         |      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15-86 |
|----------|-------|

제출년월일 : 2015. 10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개정이유

현행 조례의 상위법령 위배소지를 해소하고, 「지방세기본법」 개정내용을 반영하며, 기타 인용조문 수정 및 용어정비를 통한 내용의 명확화를 위해 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구세 기본 조례 안 제17조제1항 공탁 규정 삭제, 예탁으로 일원화

- 공매 등에서 발생한 교부할 금전을 자치단체의 금고에 예탁하도록 개정

나. 구세 기본 조례 안 제39조제3항 체납처분 중지 시 공고기간 연장

- 상위법인 「국세징수법」 제8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 중지 시 공고기간을 1개월로 연장하여 납세자의 알 권리 보장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세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「국세징수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규제여부 :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에 해당  
되지 않음

#### **4. 기타사항**

가. 입법예고 : 2015. 8. 27. ~ 9. 16. (제출된 의견 없음)

나.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
다.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
라.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 심의회 심의·의결(2015. 10. 6)

마.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바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제26조”를 “제26조제1항”으로 하고, “기한이 만료되기”를 “기한 만료일 3일”로 하며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단, 구청장은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자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.

제9조제2항 중 “보통우편”을 “일반우편”으로 한다.

제10조의 제목 “(보통우편 송달부)”를 “(일반우편 송달부)”로 하고, 제10조 전단 중 “보통우편”을 각각 “일반우편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1항 본문 중 “미납구세”를 “법 제64조에 따른 미납구세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.

제15조제3항 중 “주무관청이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결정하면”을 “주무관청으로부터 영 제51조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”으로 한다.

제17조의 제목 “(공탁 등)”을 “(교부금전의 예탁)”으로 하고, 제17조제1항 본문 중 “공탁하거나 또는 구금고”를 “구금고”로 하며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.

제22조제1항 중 “영 제67조 및 제68조”를 “법 제80조 및 조례 제21조”로 한다.

제23조 전단 중 “징수하여야 한다”를 “징수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24조를 삭제한다.

제25조제1항제1호 중 “공탁수령증”을 “공탁영수증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국채·지방채, 사채의 등록확인증

제25조제1항제6호 중 “등기필증 또는 등록필증”을 “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확인증”으로 한다.

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이전시”를 “이전 시”로 한다.

제28조의 제목 “(구세확정전 보전압류)”를 “(구세확정 전 보전압류)”로 한다.

제37조의 제목 “(공매처분 유보)”를 “(공매처분 보류)”로 하고, 제37조제1항 중 “유보하여야 한다”를 “보류할 수 있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유보기간”을 “보류기한”으로 한다.

제39조제3항 중 “10일간”을 “1개월간”으로 한다.

제45조제2항 중 “1년 이내에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인과 전세권·질권·저당권 설정계약이나 가동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통정”을 “전 1년 내 영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과 임대차계약, 전세권·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계약, 가동기 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서로 짜고 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<br>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<br>정<br>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br>1. (생 략)<br>2. "우편"이란 「우편법 시행령」 및 「우편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보통우편 및 등기우편(배달증명 우편을 포함한 다)을 말한다. | 제2조(정의) -----<br>-----.<br>1. (현행과 같음)<br><삭 제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8조(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) ① 납세자가 법 제26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단서 신설><br><br>② (생 략)    | 제8조(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) ① -----제26조제1항 -----<br>-----기한 만료일 3일 -----<br>----- 단, 구청장은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자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.<br>② (현행과 같음) |
| 제9조(서류송달의 방법) ① (생 략)<br>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9조(서류송달의 방법) ① (현행과 같음)<br>② ----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 
매년 부과고지하는 구세 중 1매  
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  
고지서 및 독촉장의 송달은 보통  
우편 방법으로 할 수 있다.

③ ~ ⑤ (생략)

제10조(보통우편 송달부) 보통우  
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 법  
제30조제6항에 따른 보통우편  
송달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 
정하는 바에 따른다. 이 경우 발  
송한 우체국의 접수인을 날인  
받아 보관하여야 한다.

제14조(미납구세 등의 열람) ①  
미납구세의 열람신청은 임차인  
이 하여야 한다. 다만, 임차인과  
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 
법률」에서 정하는 가족관계가  
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 
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열람  
하도록 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15조(허가 등의 제한) ①·②  
(생략)

③ 구청장은 주무관청이 법 제  
65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정지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일반  
우편 -----.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일반우편 송달부) 일반우  
편 -----  
-----일반우편  
-----  
-----.

제14조(미납구세 등의 열람) ①  
법 제64조에 따른 미납구세 --  
-----, <후단 삭제>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5조(허가 등의 제한) ①·②  
(현행과 같음)

③ -----주무관청으로부터  
영 제51조제2항의 통지를 받

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결정하면 해당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7조(공탁 등) ①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법 제72조에 따라 공탁하거나 또는 구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. 다만, 구금고에 예탁할 경우 예탁일부터 6개월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공탁하여야 한다.

②·③ (생략)

제22조(징수유예등의 처리) ① 세무공무원은 영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유예등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내용 및 담보내용 등을 검토하고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에 징수유예등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23조(징수유예등의 취소) 법 제84조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에 관련된 구세를 한꺼번에 징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분할고지를 한 경우에

으면 -----  
-----  
-----.

제17조(교부금전의 예탁) ① ---  
-----  
-----  
-----구금고-----  
---. <후단삭제>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22조(징수유예등의 처리) ① -  
-----법 제80조 및 조  
례 제21조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3조(징수유예등의 취소) ----  
-----  
-----  
-----징수할 수 있다.  
-----

는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 
총금액을 한꺼번에 부과징수하  
여야 한다.

제24조(납세담보의 요구) 구청장  
은 법 제26조제2항 및 제82조에  
따라 납세담보를 요구하여야 한  
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  
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를 제  
외하고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  
구하지 아니한다.

1. 법 제80조제1항제1호의 사유  
로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를 하  
는 경우

2. 일정지역의 모든 납세자에  
대하여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  
등을 하는 경우

3. 이미 제공받은 담보가 있거  
나 압류한 재산이 있는 경우로  
서 해당 재산으로 구세채권 확  
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 
경우

제25조(납세담보물의 보관) ①  
세무공무원은 납세담보에 관한  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증서  
등을 견고한 금고에 넣어 보관  
하여야 하며, 금고가 없는 경우

-----  
-----  
-----.

<삭 제>

제25조(납세담보물의 보관) ① 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에는 구금고에 의뢰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
1. 현금·유가증권의 공탁수령  
증

2. 국채·지방채의 등록필증서

3. ~ 5. (생략)

6. 토지·건물·공장재단·광  
업재단·선박·항공기 및 건  
설기계의 경우에는 해당권 설  
정을 필한 등기필증 또는 등  
록필증

② (생략)

제26조(등기·등록이 필요한 재산  
의 압류) ① 권리 이전시 등기  
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압  
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압류  
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 
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  
등 필요한 때에는 조사 전에 압  
류할 수 있다.

1. 2. (생략)

② (생략)

제28조(구세확정 전 보전압류) (생  
략)

제37조(공매처분 유보) ① 이의

-----  
-----.

1. -----공탁영  
수증

2. 국채·지방채, 사채의 등록확  
인증

3. ~ 5. (현행과 같음)

6.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등기완료통지서 또는  
등록확인증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6조(등기·등록이 필요한 재산  
의 압류) ① -----이전시 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8조(구세확정 전 보전압류)  
(현행과 같음)

제37조(공매처분 보류) ① -----

신청,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접수된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의 공매처분을 유보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공매처분 유보기간은 이의신청,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.

③ (생략)

제39조(채납처분의 중지와 공고)

①·② (생략)

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채납처분을 중지한 경우에는 일간신문·공보에 게재하거나 구청·동주민센터 게시판에 10일간 공고하여야 한다.

④ (생략)

제45조(지방세 우선권의 확보) ① (생략)

② 납세자가 채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구세의 법정기일 1년 이내에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인과 전세권·질권·저당권 설정계약이나 가등기설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보류할 수 있다.

② -----보류기한 -----  
-----  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39조(채납처분의 중지와 공고)

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1개월  
간 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45조(지방세 우선권의 확보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 
전 1년 내 영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과 임대차계약, 전세권·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계약.

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  
을 한 경우에는 통정한 허위계  
약으로 추정되므로 즉시 법원에  
해당 행위의 취소청구 등 필요  
한 조치를 취하고, 해당 재산의  
압류 등을 하여야 한다.

가등기 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  
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서로  
짜고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**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  
**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**

**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**

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.

**2. 미첨부 근거 규정**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**3. 미첨부 사유**

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**4. 작성자**

|        | 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|
| 작성자 이름 | 기획경제국 세무1과 안양순 |
| 연 락 처  | 02-3153-8702   |